

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명

-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황유정 의원입니다.

- 「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
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
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01호
「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
드리겠습니다.

-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 게시를 통하여
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 등 시민의 애도 및
참여를 보장하며,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을 개방하여 사별자의
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- 또한,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과 보건복지부 「장사 업무 안내」에 따라 장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무연고 사망자 대상과 「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」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이 상이하여 그 대상을 동일하게 하고,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연고자가 구속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 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